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69
----------	------

발의연월일 : 2017. 1. 4.

발의자 : 박명재 · 이명수 · 이현승
신보라 · 김정재 · 배덕광
윤상직 · 경대수 · 곽대훈
박성중 · 김현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률 제 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과태료) ① · ② (생 약) <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u>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u> <u>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